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4. 22.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배용식 의원 외 12인(박정환, 윤권근, 김태형, 안대국, 홍복조, 이영빈, 이성순, 김귀화, 이신자, 정창근, 박재형, 원종진)
- 발의일자: 2020. 2. 13.
- 회부일자: 2020. 4. 9.
- 상정 및 의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 4. 22.)

2. 제정이유

-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서점’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다.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 (안 제7조)
- 마. 포상(안 제10조)

4. 관계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박성우)

- 현재 대형 서점의 중·소도시로의 영업장 확대 추세와 더불어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의 사유로 지역 중·소 서점 경우 전국적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지역 중·소 서점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달서구 관내의 (독서)문화 환경의 위축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서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안 제2조)에 대해 구청장은 경영안정 지원 계획을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토록 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 방안으로 창업 상담 및 교육, 판로 환경 개선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책과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안 제6조)토록 규정.
- 대구광역시에서도 조례안과 같은 취지에서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대구권 지역 서점들을 통한 도서 구매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동 조례안 조문별로도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동안 조례는 없었지만, 집행부는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 이들에게서 도서를 구입하여 왔음.
- 따라서 집행부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이들 중소 서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시책들을 마련 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